



# 시 보



제1532호 2022. 1. 10.(월)

## 조 례

-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2
-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23
-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28
-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 31
-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42
-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9
-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6
-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74
-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0
-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3
-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87
-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1
-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5
-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8

## 규 칙

- 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10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 112

## 고 시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27
-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129

## 공 고

- 2022년 목포시 조례 제·개폐청구에 대한 연서 주민수 공고 ----- 146
- 2022년도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 ----- 148
- 2022년 빈집정비 지원 사업 공모 시행 공고 ----- 151
-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58

회람							
----	--	--	--	--	--	--	--

제37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551 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출장 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면, 해임, 직권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파면, 해임, 직권면직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2장 근무시간**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의장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같은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업무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 제3장 휴가

**제16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와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이 및 제2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하여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 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4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

⑥ 의장은 공무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제20조(연가 사용의 권장)** 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이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의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의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18조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 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text{○ 휴직자의 연가일수} = \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12 \text{개월} \times \text{해당연가일수}$$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외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의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 ⑥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⑦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7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때,
-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7. 천재지변, 교통 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 1. 임신기간이 15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하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의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⑧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의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각각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은 제18조 제2항에 따르며, 본 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회 분할 가능)
-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회 분할 가능)
- 3. 30년 이상 : 20일 (4회 분할 가능)

⑪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함께가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⑫ 제1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⑮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⑯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⑰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6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9를 따른다.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다.

###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29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의회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30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9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운영규정)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목포시의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의회의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팀에서 담당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7조 관련)

-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37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0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552 호

### 목포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

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②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

무국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7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553 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공무원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목포시의회의장”으로 본다.
-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 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

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7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0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554 호

### 목포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법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

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목포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7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동 행정복지센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목포시보, 목포시 게시판, 목포시 홈페이지(목포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 2.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목포시 주민 조례 제·개폐청구 조례」는 폐지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type="checkbox"/> 개정 <input type="checkbox"/> 폐지)
-------------------	---

이유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필요없음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명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의회의장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별지 제3호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명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호서식]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동 (○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별지 제6호서식]

###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

신청 취지	
-------	--

신청 사유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37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555 호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목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목포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목포시의회 의원과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 같은 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육아휴직, 가사휴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휴직중인 공무원
-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 4.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을 받고, 그처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공무원

③ 의장은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하는 항목
-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 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 항목)** 자율항목은 의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 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 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 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

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 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목포시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 1. 지역 주민
- 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는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⑦ 협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장·목포시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목포시장과 협의하여 목포시의회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7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0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556 호

###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와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을 “「지방자치법」 제42조 따라 목포시의회의원 ”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를 “뜻은”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직무”라 함은 의회의

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를 ““직무”란 목포시 의회의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로 하고 제2조제2호 중 “이라 함은 영 제33조”를 “란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직무”를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고,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그 밖의 직무로”를 “직무로” 로 한다.

제5조 중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한다.

별표는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포시의회의원의 상해·사망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원이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목포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와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목포시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의원 ----- ----- ----- ----- -----.</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p> <p>2.“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 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p> <p>3.“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p>	<p>제2조 (정의) ----- -뜻은-----.</p> <p>1.“직무”란 목포시의회의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p> <p>2.-----란 「지방자치법」 제 40조-----.</p> <p>3. -----이란 ----- ----- -----.</p>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b></p> <p>① (생략)</p> <p>1. ~ 3. (생략)</p> <p>4. <u>그 밖의</u>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p> <p>② 제1항 각 호의 “<u>직무</u>”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u>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u></p>	<p><b>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b></p> <p>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u> <u>밖</u>에 ----- --</p> <p>② -----<u>보상금 지급대상</u> ----- 「<u>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u>」 별표 2에 따른 “<u>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u>”을 준용한다.</p>
<p><b>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b></p> <p>① (생략)</p> <p>1. ~ 2. (생략)</p> <p>3. <u>그 밖의</u>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생략)</p>	<p><b>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b></p> <p>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직무로</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b></p> <p>① (생략)</p> <p>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u>요하는</u> 경우를 말한다.</p>	<p><b>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필요로 하는 -----.</p>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제 호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 결과			처리기한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 상 금 청구내용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사 망 · 장 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 태 등 경 위 조 사 내 용					
심 의 회	(결 정)				
	(결정이유)				
심의결과	(심의위원 서명)				
<p>「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위원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목 포 시 장 귀하</p>					

제37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557 호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에 따른 목포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을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목포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 제목과 조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목포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

다.

제2조제2호 중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주민 복리의 증진”으로 하고 제5호 중 “공사행위에”를 “공사(公私)행위에”로 하고, “책임진다”를 “책임을 진다”로 한다.

제3조 제목을 “윤리실천규범위 준수”로 하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면서 시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활동으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와 관련하여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제목과 조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등) ① 시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의장은 시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역을 연 1회 이상 목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중 “시의원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를 “제6조제1항”으로 하고,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시의원은 목포시 및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제목과 제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수의계약 관련 자료 제출 등)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목포시장으로부터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 받은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자료 제출이나 조회 결과를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 통보 현황을 연 1회 점검해야 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시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목포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목포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목포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목포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② 의장은 시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③ 의장은 시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중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를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로 하고,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44조제2항”으로 하고, 제4호 중 “목포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목포시 및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 및 그 기관 · 단체가 설립 ·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목적 거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 (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른 목포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 1 조 ( 목 적 )</b> -----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목포시의회 의원 ----- ----- -----</p>
<p><b>제2조 (윤리강령)</b>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li> <li>3. ~ 4. (생 략)</li> <li>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li> </ol>	<p><b>제2조(윤리강령의 준수)</b> 목포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주민 복리의 증진 ----- -----</li> <li>3. ~ 4. (현행과 같음)</li> <li>5. ----- 공사(公私)행위에 ----- 책임을 진다.</li> </ol>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 (윤리실천규범) 시의원은 제 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 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li> <li><u>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li> <li><u>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u></li> <li><u>4. 지위를 남용하여 목포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u></li> <li><u>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u></li> </ol>	<p><u>제3조 (윤리실천규범 준수)</u></p> <p>-----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직무를 수행하면서 시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u></li> <li><u>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u></li> <li><u>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u></li> <li><u>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u></li> <li><u>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활동으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u></li> </ol>

현 행	개 정 안
<p>6. <u>심의대상 안전이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u>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u></p> <p>8. <u>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6. <u>심의대상 안전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u></p> <p>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u>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u></p> <p>8. <u>직무와 관련하여 해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 된다.</u></p>
<p><u>제4조 (윤리심사 등) 시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u></p>	<p><u>제4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등) ① 시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 (겸직신고) ①</b> 시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시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략)</p> <p>⑤ <u>의장은 시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u></p> <p>⑥ (생략)</p> <p>⑦ <u>의장은 시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목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u></p>	<p><b>제5조(겸직신고) ①</b></p> <p>-----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p> <p>-----.</p> <p>②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p> <p>-----.</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삭 제)</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u>의장은 시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역을 연 1회 이상 목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시의원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p> <p>( 신 설 )</p>	<p>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p> <p>-----</p> <p>-----</p> <p>-----.</p> <p>② 시의원은 목포시 및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목포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의장은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p>	<p>제7조(수의계약 관련 자료 제출 등)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목포시장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 받은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자료 제출이나 조회 결과를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생략)</p> <p>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 통보 현황을 연 1회 점검해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u>  <u>시의원은 목포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u></p> <p><u>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목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u></li> <li><u>2. 목포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u></li> <li><u>3. 목포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u></li> </ol> <p><u>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u></p> <p><u>④ 의장은 시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u></p>	<p><u>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u> <u>시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목포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u></li> <li><u>2. 목포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u></li> <li><u>3. 목포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u></li> <li><u>4. 법령에 따라 해당 목포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u></li> </ol> <p><u>② 의장은 시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u>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시임하지 아니할 때</u></p> <p><u>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u></p> <p><u>③ 의장은 시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u>제9조(징계 등) 시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u></p> <p>1. ( 생략 )</p> <p>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p> <p>3. (생 략)</p> <p>4. 시의원이 <u>목포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u></p> <p>5. (생 략)</p> <p>6. (생 략)</p>	<p><u>제9조(징계 등)</u> -----<u>경우에는 윤 리 특 별 위 원 회 에</u> ----- -----.</p> <p>1. ( 현행과 같음 )</p> <p>2. ----- <u>법 제44조제2항</u> -----</p> <p>3. (현행과 같음)</p> <p>4. -----<u>목포시 및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목적 거래</u></p> <p>5.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 [별표 1]

## 징계기준(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li> <li>-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li> <li>○ 겸직 미신고 및 허위신고</li> <li>○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li> </ul>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거래금지 위반</li> <li>○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li> <li>-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li> <li>○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미신고 및 허위신고</li> <li>○ 계약체결 제한 위반</li> <li>○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li> </ul>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별지 제3호서식]

목포시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연 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목포시의회의원

(인)

목포시의회의장 귀하

제37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0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558 호

###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표창장·감사장·공로상·상장”을 “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상장”으로 하고 제2항 중 “각 호의 경우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하고 제2항제2호 중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이거나, 평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를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사회 공헌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로 하고 제4항 중 “의정수행에”를 “감사장은 의정수행에”로 하고 “선양시킨”를 “널리 알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따로 붙임”을 “별지”로 하고 “의하되”을 “따르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목포시의회 의원, 동장, 각급 기관장, 단체장 또는 10명 이상 주민의 연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목포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따로붙임 제6호 서식이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를 “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 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로 한다.

제9조 조명 “공적심사위원회”를 “목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목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① 목포시의회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목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3명과 목포시의회 사무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된다.

제11조 중 “따로 붙임”을 “별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목포시의회 포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 (포상의 종류)</b> ① 포상은 <u>표창장</u>과 <u>감사장</u> <u>공로상</u> <u>상장</u>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p> <p>②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p> <p>1. (생략)</p> <p>2. <u>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이거나, 평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u></p> <p>③ (생략)</p> <p>④ <u>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u>이나 단체에 수여한다.</p> <p>⑤ (생략)</p>	<p><b>제4조 (포상의 종류)</b> ① — <u>표창장</u>, <u>감사장</u>, <u>공로상</u>, <u>상장</u>-----.</p> <p>②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u> -----.</p> <p>1. (현행과 같음)</p> <p>2. <u>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사회 공헌에 공적이 뚜렷한 경우</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감사장은 의정수행에</u> ----- <u>년</u> <u>리</u> <u>알린</u> -----.</p> <p>⑤ (현행과 같음)</p>
<p><b>제5조 (포상방법과 부상)</b> ① 포상은 <u>따로</u> <u>붙임 제호</u> ~ <u>제4호</u>의 서식에 <u>의하되</u> 그 외 필요한 경우 시무국장이 정한다.</p> <p>② (생략)</p>	<p><b>제5조 (포상방법과 부상)</b> ① — <u>별지</u> ----- <u>따르되</u> -----.</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7조(포상대상자 추천)</b> <u>포상대상자 추천은</u> <u>시의회 의원, 동장, 각급 기관이나 단체장,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로</u> <u>따로</u> <u>붙임 제5호 서식이나 공적조서에</u> <u>의하여</u> <u>추천을 받는다.</u></p>	<p><b>제7조(포상대상자 추천)</b> ① <u>포상대상자 추천은</u> <u>목포시의회 의원 동장 각급 기관장 단체장 또는 10명 이상 주민의 연서로</u> <u>할 수 있다.</u></p> <p>② <u>제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자는</u> <u>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u> <u>목포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b>제8조(공적심사)</b> 포상은 공적조사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므로 붙임 제6호 서식이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b>제8조(공적심사)</b></p> <p>_____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 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p>
<p><b>제9조(공적심사위원회)</b>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목포시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p> <p>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한다.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3인과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맡는다.</p> <p>③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b>제9조(목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b> ① 목포시의회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목포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3명과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p> <p>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 (수상자 명부) 포상대상자에 대하여는 <u>따로 붙임</u> 제7호 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p>	<p>제11조 (수상자 명부) -----          ----- <u>별 지</u>          -----          -----.</p>

제37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0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559 호

###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를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 ”으로 한다.

제2조 중 “의원”을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목포시 여비조례」”를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 ----- ----- ----- ----- -----.</p>
<p>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생략)</p>	<p>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여비지급기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를 준용한다.</p>	<p>제8조(여비지급기준) ----- 따라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을 적용한다.</p>
<p>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목포시 여비조례」에 따른다.</p>	<p>제 1 1 조 ( 준 용 )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p>

제37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560 호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자치법 제90조와 제91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를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통합”을 “총괄”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소속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

⑤ 정책지원관은 7급이하의 일반직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다.

제6조 중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목포시”를 “사항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책지원관 도입에 관한 특례) 정책지원관 정수의 2분의 1은 2022년도에 임명하고, 나머지 정원은 2023년도에 임명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목포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90조와 제91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1조(목적)</b>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목포시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p>
<p><b>제2조(사무국의 설치)</b> ① <u>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u>                      ② (생략)</p>	<p><b>제2조(사무국의 설치)</b> ① <u>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                      ② (현행과 같음.)</p>
<p><b>제3조(사무국장)</b> ① (생략)                      ② <u>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p>	<p><b>제3조(사무국장)</b>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총괄</u> -----.</p>
<p><u>&lt;신설&gt;</u></p>	<p><b>제4조의2(정책지원관)</b> ① <u>목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u>                      ② <u>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u>                      ③ <u>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                      ④ <u>정책지원관의 정원은 소속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한다.</u>                      ⑤ <u>정책지원관은 7급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5항에 따른다.</u></p>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목포시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조 ( 시 행 규 칙 ) -----사항 은 -----.

제37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0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561 호

###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하고, “목포시 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를 “목포시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를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

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를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가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안과 결산”를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 5항 중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삭제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 중인 특별 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목포시 의회</u> (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u>지방자치법</u>」 제64조-----<u>목포시의회</u> ----- ----- -----.</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u>의회</u>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u>목포시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 -----.</p>
<p>제7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특별위원회는 <u>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u></p>	<p>제7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 ----- <u>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가 ----- 때에는 ----- ----- <u>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u></u></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u>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② -----에 따라 ----- ----- ----- <u>정할 수 있다.</u> <u>이 경우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u></p>
<p>③특별위원회는 <u>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 ----- <u>본회의의 의결로 종료한다.</u></p>
<p>④ 의회는 <u>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u></p>	<p>④ ----- <u>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u>----- -----.</p>

⑤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정  
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⑥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  
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 윤리강령과 윤  
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 자격-----.

⑥ < 삭 제 >

제37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0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562 호

###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45조·제47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로 하고,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목포시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를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의장”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34조에 따른 전연도”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하고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회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의하거나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제45조·제47조와 「<u>지방자치법 시행령</u>」 제54조에 따라 <u>목포시의회</u>(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u>지방자치법</u>」 제53조·제54조·제56조 ----- <u>목포시의회</u> ----- ----- ----- ----- ----- -----.</p>
<p>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 <u>의회</u>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p>	<p>제2조 (연간 총 회의일수) <u>목포시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 ----- -----.</p>
<p>제5조 (의회운영) ①<u>의장</u>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조 (의회운영) ①<u>의회 의장</u>(이하 “의장”이라 한다) ----- ----- ----- ----- ----- -----.</p>
<p>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u>법 제134조</u>에 따른 <u>전연도</u> 결산안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p> <p>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u>법 제41조</u></p>	<p>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 「<u>지방자치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 ----- <u>전연도</u> ----- ----- -----.</p> <p>② ----- <u>법 제49조</u></p>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 생략 )

<신 설>

<신 설>

제1항-----  
 ----- 법 제142조-----  
 -----  
 -----  
 -----  
 -----  
 -----.

③ ( 현행과 같음 )

④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회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의하거나 제출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제37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0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563 호

###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51조”로 하고, “목포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목포시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를 “목포시의회”라 하고, 제3호 “법 제113조부터 116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p>1.-2. ( 생략 )</p> <p>3. 법 제113조부터 116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p>	<p>제1조 (목적) ----- 「지방자치법」 제51조 -----  <u>목포시의회</u> -----  -----  -----  -----  -----.</p> <p>제2조(범위) <u>목포시의회</u>-----  -----  -----.</p> <p>1.-2. ( 현행과 같음 )</p> <p>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u>제129조</u> -----</p>

제370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0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564 호

###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하고,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목포시의회”로 하며,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라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목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고, “감사”를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사”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며, 제4호 중 “법 제104조 제2항이나 제3항”을 “법 제117조 제2항이나 제3항”으로 하고, 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외의”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하고, “법 제41조 제3항”을 “법 제49조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41조 제5항”을 “법 제49조제5항”으로 하고, 제2호 중 “의의가 있는자는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를 “의의가 있는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5항”을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7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법 41조”를 “법 49조”로 하고, “「목포시여비조례」의 국내여비지급규정중 5급 상당액에 의한다.”를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를 준용하고 국내여비지급표의 5급 상당액에 의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41조 제3항 후단”을 “법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42조 제2항”을 “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6항 중 “영 제38조”를 “영 제40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 반 사 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관	임 시 적 세 외 수 입	잡 수 입	목	과 태 료	
납입기한		년 월 일			
일금 ₩					
위의 과태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목포시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목포시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 반 사 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관	임 시 적 세 외 수 입	잡 수 입	목	과 태 료	
납입기한		년 월 일			
일금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인)					
(수 납 기 관 명)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 반 사 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관	임 시 적 세 외 수 입	잡 수 입	목	과 태 료	
납입기한		년 월 일			
일금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인)					
귀 하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 반 사 항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관	임 시 적 세 외 수 입	잡 수 입	목	과 태 료	
납입기한		년 월 일			
일금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인)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처 분 내 역	처 분 청		납부통지서번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위에 적시한 사유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목 포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목 포 시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	① 성 명		③ 생년월일	
	②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⑤ 과태료금액	
	⑥ 부과기준		⑦ 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귀하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04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목포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시의 사무와 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위임사무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 제163조 -----

4. 법 제117조 제2항이나 제3항 -----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 법 제13조 ----- 법 제49조 제3항 -----

중 국회 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③ ( 생략 )

④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 1. ( 생략 )
- 2. 과태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별지 제2호서식)

제10조의2(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다.

제11조 (증인의 보호와 실비보상)

①-② ( 생략 )

③법 제41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  
-----  
-----  
-----.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③ ( 현행과 같음 )

④법 제49조 제5항 -----  
-----  
-----  
-----  
-----.

- 1. ( 현행과 같음 )
- 2. -----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제10조의2(고발의 절차)

① -----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7항-----  
-----.

제11조 (증인의 보호와 실비보상)

①-② ( 현행과 같음 )

③법 제49조-----  
-----  
-----

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하되 「목포시여비조례」의 국내여비지급규정중 5급 상당액에 의한다.

----- 「공무원여비 규정」 제30조를 준용하고 국내여비지급표의 5급 상당액에 의한다.

제12조 (국가나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 방법 등)

제12조 (국가나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 방법 등)

- ① ( 생략 )
- ② 법 제41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 현행과 같음 )
- ② 법 제49조제3항 -----  
-----  
-----  
-----.

제13조 (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42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 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리출석·답변의 통지) ----- 법 제51조제2항 -----  
-----  
-----  
-----  
-----  
-----  
-----.

제21조(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제21조(감사 또는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 ①-⑤ ( 생략 )
- ⑥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영 제38조를 따라야 하며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①-⑤ ( 현행과 같음 )
- ⑥ ----- 영 제40조 -----  
-----  
-----.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남 부 성 명 의 무 자 주 소		남 부 성 명 의 무 자 주 소		남 부 성 명 의 무 자 주 소		남 부 성 명 의 무 자 주 소	
관	인	관	인	관	인	관	인
세	영	세	영	세	영	세	영
점	수	점	수	점	수	점	수
과	태	과	태	과	태	과	태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금 ₩		일 금 ₩		일 금 ₩		일 금 ₩	
위의 과태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목포시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목포시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목 포 시 장 (인)		남 부 자 성 명 (인)		남 부 자 성 명 (인)		남 부 자 성 명 (인)	
(수 납 기 관 명)		(수 납 기 관 명)		(수 납 기 관 명)		(수 납 기 관 명)	
귀 하		귀 하		귀 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9조 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위 반 사 항	
남 부 성 명 의 무 자 주 소		남 부 성 명 의 무 자 주 소		남 부 성 명 의 무 자 주 소		남 부 성 명 의 무 자 주 소	
관	인	관	인	관	인	관	인
세	영	세	영	세	영	세	영
점	수	점	수	점	수	점	수
과	태	과	태	과	태	과	태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금 ₩		일 금 ₩		일 금 ₩		일 금 ₩	
위의 과태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목포시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목포시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목 포 시 장 (인)		남 부 자 성 명 (인)		남 부 자 성 명 (인)		남 부 자 성 명 (인)	
(수 납 기 관 명)		(수 납 기 관 명)		(수 납 기 관 명)		(수 납 기 관 명)	
귀 하		귀 하		귀 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9조 4항 관련)

신청인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처분	처분청	납부통지서 번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내역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위에 적시한 사유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목포시장 귀하</p>			

신청인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처분	처분청	납부통지서 번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내역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위에 적시한 사유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목포시장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b>목 포 시</b>			
문서번호 :			
수신 :			
제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① 성명	③ 생년월일	
	② 주소		
과태료 처분 내역	④ 고지일자	⑤ 과태료금액	
	⑥ 부과기준	⑦ 이의제기일자	
<p>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p> <p>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p> <p>끝.</p> <p style="text-align: center;">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귀하</p>			

<b>목 포 시</b>			
문서번호 :			
수신 :			
제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① 성명	③ 생년월일	
	② 주소		
과태료 처분 내역	④ 고지일자	⑤ 과태료금액	
	⑥ 부과기준	⑦ 이의제기일자	
<p>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p> <p>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p> <p>끝.</p> <p style="text-align: center;">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귀하</p>			

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829 호

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경로당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구 분	지원가능 품목	비고
건강 운동 기구	한궁, 혈압계, 허리벨트마사지 <b>안마의자, 식탁, 쇼파</b>	
전자 제품	냉장고(일반형), TV, 에어컨, 밥솥, 선풍기, 가스렌지, 진공청소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뚜껑형), 전자레인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구 분	지원가능 품목	비 고	구 분	지원가능 품목	비 고
건강 운동 기구	한궁, 혈압계, 허리벨트마사지		건강 운동 기구	한궁, 혈압계, 허리벨트마사지 <b>안마의자, 식탁, 쇼파</b>	
전자 제품	냉장고(일반형), TV, 에어컨, 밥솥, 선풍기, 가스렌지, 진공청소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뚜껑형), 전자레인지		전자 제품	냉장고(일반형), TV, 에어컨, 밥솥, 선풍기, 가스렌지, 진공청소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뚜껑형), 전자레인지	
<p>※ 기타품목 지원불가 사유 : <u>짚은 고장과 유지관리가 어렵고, 수리비용이 과다, 지속 요구되는 안마의자, 런닝머신, 쇼파 등과 경로당 운영을 위한 필수 전자제품이 아닌 물품은 지원 제외</u></p>			<p><b>(내용삭제)</b> 지원물품만 표기</p>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월 10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830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 정 >

[별표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계	시장						
<b>총 계</b>				<b>1,367</b>	<b>605</b>	<b>29</b>	<b>104</b>	<b>313</b>	<b>316</b>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b>1,346</b>	<b>598</b>	<b>29</b>	<b>104</b>	<b>299</b>	<b>316</b>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69	26	3	3	14	23
	6급			263	133	5	14	64	47
	7급			320	166	12	16	75	51
	8급			346	128	7	55	75	81
	9급			338	139	1	15	69	114
연구직	계			17	4			13	
	연구관								
	연구사			17	4			13	
지도직	계			3	2			1	
	지도관								
	지도사			3	2			1	

< 개 정 >

[별표 2]

목포시 직렬별 지방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인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반직	6급	소계	263	133	5	14	64	47
		행 정	62	32	4		4	22
		세 무	7	7				
		사회복지	9	4				5
		방 호	1				1	
		공 업	3	1			2	
		해양수산	2	2				
		보 건	1			1		
		시 설	3	1			2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3	11				12
		행정+전산	9	8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7	4			3	
		행정+시설	48	28			20	
		행정+학예연구소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소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6			3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시설	7	6			1	
		행정+공업+학예연구소	1	1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소	1	1				
		행정+시설+녹지+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연구소	1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소	1				1	
		운 전	4	3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2			1	
<b>일반직</b>	<b>7급</b>	<b>소계</b>	<b>320</b>	<b>166</b>	<b>12</b>	<b>16</b>	<b>75</b>	<b>51</b>
		행 정	113	<b>55</b>	<b>11</b>		<b>17</b>	30
		세 무	22	21			1	
		사회복지	35	17				18
		전 산	6	<b>4</b>	<b>1</b>		1	
		방 호	1				1	
		공 업	25	11			14	
		농 업	2	2				
		녹 지	3				3	
		해양수산	5	5				
		보 건	1	1				
		의료기술	0			-		
		간 호	6			<b>6</b>		
		환 경	5				5	
		시 설	27	19			8	
		방송통신	3	3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6	3				3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4	1			<b>3</b>	
		행정+시설	3	<b>2</b>			1	
		행정+학예연구소	1	0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4	-		<b>4</b>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등
		직렬별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 전		14	6	=		8	
		위 생		2	1			1	
		토목운영		0				0	
		건축운영		1				1	
		전기운영		3				3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0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지속 기관	사업소	동
일반직	8급	소계	346	128	<u>7</u>	55	75	81
		행 정	95	46	<u>2</u>		17	30
		세 무	11	9			2	
		사회복지	53	<u>16</u>				37
		숙 기	3		3			
		전 산	2	<u>2</u>	-			
		공 업	21	5		1	15	
		농 업	1	1				
		녹 지	4				<u>4</u>	
		해양수산	4	4				
		보 건	5			5		
		식품위생	1			<u>1</u>		
		의료기술	6			<u>6</u>		
		간 호	34			<u>34</u>		
		환 경	3				3	
		시 설	29	18			11	
		방송통신	4	2	<u>1</u>		<u>1</u>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0				-	
		행정+농업	1	<u>1</u>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5			1	
		행정+방재안전	0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3				3	
		공업+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u>1</u>		<u>2</u>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0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1			1		
		방 호	0	-				
		운 전	15	<u>7</u>	1		7	
		위 생	0	0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u>1</u>	
		전기운영	4	1			<u>3</u>	
		기계운영	4	0			<u>4</u>	
		열관리운영	0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2		-		1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등
		직렬별							
일반직	9급	소계		338	<u>139</u>	1	15	69	<u>114</u>
		행 정		95	<u>45</u>			6	44
		세 무		4	4				
		전 산		5	<u>5</u>				
		사회복지		90	<u>24</u>		3		63
		사 서		6	6				
		공 업		24	8			<u>16</u>	
		농 업		2	<u>2</u>				
		녹 지		7				<u>7</u>	
		해양수산		4	<u>4</u>				
		보 건		6			6		
		<u>식품위생</u>		1			<u>1</u>		
		환 경		4				4	
		시 설		24	<u>19</u>			<u>5</u>	
		방송통신		2	1			1	
		행정+사회복지		7					<u>7</u>
		행정+전산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u>행정+환경</u>		2				<u>2</u>	
		행정+시설		5	<u>3</u>			2	
		행정+방재안전		1	<u>1</u>				
		시설+방재안전		1	1				
		<u>보건+의료기술</u>		2			<u>2</u>		
		방 호		1	<u>1</u>				
		운 전		21	<u>5</u>	<u>1</u>	3	12	
		시설관리		2	1			1	
		건축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u>2</u>	
		기계운영		9	1			8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3	<u>2</u>			1	=
연구직		연구사합계		17	4			13	
		학예연구사		11	3			8	
		환경연구사		5				5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사합계		3	2			1	
		농촌지도사		3	2			1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신 · 구조문 대비표(별표1)

현행								개정안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1,348	595	23	104	310	316	총 계		1,367	605	29	104	313	316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327	588	23	104	296	316	일반직	계	1,346	598	29	104	299	316
	3급	1	1						3급	1	1				
	4급	9	5	1	1	2			4급	9	5	1	1	2	
	5급	69	26	3	3	14	23		5급	69	26	3	3	14	23
	6급	256	127	4	14	64	47		6급	263	133	5	14	64	47
	7급	322	170	7	17	77	51		7급	320	166	12	16	75	51
	8급	351	127	8	56	79	81		8급	346	128	7	55	75	81
	9급	319	132	0	13	60	114		9급	338	139	1	15	69	114
연구직	계	17	4			13		연구직	계	17	4			13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17	4			13			연구사	17	4			13	
지도직	계	3	2			1		지도직	계	3	2			1	
	지도관								지도관						
	지도사	3	2			1			지도사	3	2			1	

신·구조문 대비표(별표2)

현 행							개 정 안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1,348	595	23	104	310	316	총계	1,367	605	29	104	313	316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327	588	23	104	296	316	일반직 계	1,346	598	29	104	299	316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 정	1	1					행 정	1	1				
4급 소계	9	5	1	1	2		4급 소계	9	5	1	1	2	
행 정	3	3					행 정	3	3				
기 술	1			1			기 술	1			1		
행정+기술	5	2	1		2		행정+기술	5	2	1		2	
5급 소계	69	26	3	3	14	23	5급 소계	69	26	3	3	14	23
행 정	15	7	1			7	행 정	14	7	1			6
시 설	1	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6	9	1		4	2	행정+시설	16	9	1		4	2
행정+화에연구관	1	0			1		행정+화에연구관	1	0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4					4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4					4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농업+녹지	1					1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공업+농업+간호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사회복지+농업+해양수산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시설+공업	1					1
공업+보건+환경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환경+시설	1				1		공업+보건+환경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2				2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b>6급 소계</b>	<b>256</b>	<b>127</b>	<b>4</b>	<b>14</b>	<b>64</b>	<b>47</b>	<b>6급 소계</b>	<b>263</b>	<b>133</b>	<b>5</b>	<b>14</b>	<b>64</b>	<b>47</b>
행 정	60	31	3		4	22	행 정	62	32	4		4	22
세 무	7	7					세 무	7	7				
사회복지	8	3				5	사회복지	9	4				5
방 호	1	0			1		방 호	1	-			1	
공 업	2				2		공 업	3	1			2	
해양수산	2	2					해양수산	2	2				
보 건	1			1			보 건	1			1		
시 설	3	1			2		시 설	3	1			2	
행정+세무	5	3			1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3	11				12	행정+사회복지	23	11				12
행정+전산	8	7	1				행정+전산	9	8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환경	5				5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3			3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7	4			3		행정+공업	7	4			3	
행정+시설	47	27			20		행정+시설	48	28			20	
행정+학예연구소	1	1					행정+학예연구소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1			1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소	1			1			공업+환경연구소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보건+간호	6			3		3
행정+세무+시설	2	2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2					2	행정+전산+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공업+시설	7	6			1		행정+공업+시설	7	6			1	
행정+공업+학예연구사	1	1					행정+공업+학예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시설+녹지+농촌지도사	1				1		행정+시설+녹지+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연구사	1				1		공업+보건+환경연구사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1				1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1				1	
운 전	4	3			1		운 전	4	3			1	
토목운영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사무운영	3	2			1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 정	111	57	6		18	30	행 정	113	55	11		17	30
세 무	22	21			1		세 무	22	21			1	
사회복지	35	17				18	사회복지	35	17				18
전 산	6	5			1		전 산	6	4	1		1	
방 호	1				1		방 호	1				1	
공 업	25	11			14		공 업	25	11			14	
농 업	2	2					농 업	2	2				
녹 지	3				3		녹 지	3				3	
해양수산	5	5					해양수산	5	5				
보 건	1	1					보 건	1	1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0			-		
간 호	5			5			간 호	6			6		
환 경	5				5		환 경	5				5	
시 설	27	19			8		시 설	27	19			8	
방송통신	3	3					방송통신	3	3				
행정+세무	3	3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6	3				3	행정+사회복지	6	3				3
행정+전산	3	3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3	3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5	1			4		행정+환경	4	1			3	
행정+시설	4	3			1		행정+시설	3	2			1	
행정+학예연구사	1	0			1		행정+학예연구사	1	0			1	
전산+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1				1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6	1		5			보건+간호	4	-		4		
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현							개						
행							정						
							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운 전	14	5	1		8		운 전	14	6	-		8	
위 생	2	1			1		위 생	2	1			1	
토목운영	0				0		토목운영	0				0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1				1	
전기운영	3				3		전기운영	3				3	
기계운영	3				3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1				1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0	0					사무운영	0	0				
<b>8급 소계</b>	<b>351</b>	<b>127</b>	<b>8</b>	<b>56</b>	<b>79</b>	<b>81</b>	<b>8급 소계</b>	<b>346</b>	<b>128</b>	<b>7</b>	<b>55</b>	<b>75</b>	<b>81</b>
행 정	94	46	1		17	30	행 정	95	46	<u>2</u>		17	30
세 무	11	9			2		세 무	11	9			2	
사회복지	51	14				37	사회복지	53	16				37
속 기	3		3				속 기	3		3			
전 산	2	1	1				전 산	2	2	-			
공 업	21	5		1	15		공 업	21	5		1	15	
농 업	1	1					농 업	1	1				
녹 지	5				5		녹 지	4				<u>4</u>	
해양수산	4	4					해양수산	4	4				
보 건	5			5			보 건	5			5		
식품위생	2			2			식품위생	1			<u>1</u>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6			<u>6</u>		
간 호	35	1		34			간 호	34			34		
환 경	3				3		환 경	3				3	
시 설	29	18			11		시 설	29	18			11	
방송통신	4	2			2		방송통신	4	2	<u>1</u>		<u>1</u>	
행정+사회복지+ 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전산	0				-	
행정+농업	2	2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5			1		행정+시설	6	5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재안전	0	-				

현							개						
행							정						
안							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전산+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3				3		공업+환경	3				3	
공업+시설	1				1		공업+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3			보건+간호	3	1		2		
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0	0					시설+방재안전	0	0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1			1			사회복지+간호	1			1		
방 호	1	1					방 호	0	-				
운 전	15	6	1		7		운 전	15	7	1		7	
위 생	0	0					위 생	0	0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5	1			4		전기운영	4	1			3	
기계운영	5	0			5		기계운영	4	0			4	
열관리운영	0	0					열관리운영	0	0				
화공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3		1		1	1	사무운영	2		-		1	1
9급 소계	319	132	-	13	60	114	9급 소계	338	139	1	15	69	114
행 정	91	41			6	44	행 정	95	45			6	44
세 무	4	4					세 무	4	4				
전 산	4	4					전 산	5	5				
사회복지	93	27		3		63	사회복지	90	24		3		63
사 서	6	6					사 서	6	6				
공 업	23	8			15		공 업	24	8			16	
농 업	1	1					농 업	2	2				
녹 지	3				3		녹 지	7				7	

현							개						
행							정						
안							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해양수산	2	2					해양수산	4	4				
보 건	6			6			보 건	6			6		
환 경	4				4		식품위생	1			1		
시 설	22	18			4		환 경	4				4	
방송통신	2	1			1		시 설	24	19			5	
행정+사회복지	5					5	방송통신	2	1			1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7					7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전산	2	2				
행정+보건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4	2			2		행정+보건	1	1				
행정+방재안전	0	0					행정+환경	2				2	
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시설	5	3			2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방재안전	1	1				
방 호	0	0					시설+방재안전	1	1				
운 전	21	6		3	12		보건+의료기술	2			2		
시설관리	2	1			1		방 호	1	1				
건축운영	1				1		운 전	21	5	1	3	12	
전화상담운영	2	2					시설관리	2	1			1	
전기운영	1				1		건축운영	1				1	
기계운영	9	1			8		전화상담운영	2	2				
화공운영	1				1		전기운영	2				2	
사무운영	6	3			1	2	기계운영	9	1			8	
연구사합계	17	4			13		화공운영	1				1	
학예연구사	11	3			8		사무운영	3	2			1	-
환경연구사	5				5		연구사합계	17	4			13	
기록연구사	1	1					학예연구사	11	3			8	
지도사합계	3	2			1		환경연구사	5				5	
농촌지도사	3	2			1		기록연구사	1	1				
							지도사합계	3	2			1	
							농촌지도사	3	2			1	

목포시 고시 제 2022-6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 목 포 시 장

○ 도로명주소 폐지 목록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붙임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061-270-8313)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www.mokpo.go.kr](http://www.mokpo.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실제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붙 임 >

연번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 15	2022. 1. 10.	건물 멸실
2	전라남도 목포시 달리길157번길 69	2022. 1. 10.	건축물대장 말소
3	전라남도 목포시 대반동길 4-1	2022. 1. 10.	건축물대장 말소
4	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5번길 19-2	2022. 1. 10.	건축물대장 말소
5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133번길 19	2022. 1. 10.	건축물대장 말소
6	전라남도 목포시 송도길20번길 6-1	2022. 1. 10.	건축물대장 말소
7	전라남도 목포시 송도길20번안길 3	2022. 1. 10.	건축물대장 말소
8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원뚝길 25-1	2022. 1. 10.	건축물대장 말소

목포시 고시 제2022 - 7호

##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 목 포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재개발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정비구역의 위치 : 목포시 용해동 339번지 일대

나. 정비구역의 면적 : 46,149.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성명 :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경운)

나. 사업시행자 주소 : 목포시 용당로 277, 2층(용해동)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2년 1월 10일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대지면적 : 40,942.0㎡

나. 건 폐 율 : 17.35%

다. 용 적 률 : 246.44%

라. 높 이 : 지하4층 ~ 지상25층 (72.75m)

마. 주 용 도 : 공동주택(10동 9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합계	분 양							임 대
		계	74A	74B	84A-1	84A-2	84B	114	
세대수	938	858	75	59	179	40	455	50	39형 80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사항**

정비기반시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계		5409.25	계	5,207.0	
대		911.00	진입도로	1,675.0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기부채납
도로		3,264.25	주차장	964.0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기부채납
구거		1,050.00	어린이공원	1,198.0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기부채납
전		184.00	경관녹지	1,370.0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기부채납

**10. 관계도서 : 게재 생략**

**11. 기타사항**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나. 관련서류 및 도서는 목포시청 건축행정과(061-270-8467) 및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61-272-5135)에 비치되어 있으며,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가능합니다.

V.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축물의명세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서

구분	연번	조번	용도	권리의 소재지	토 지				건 축 물						지상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목	면적(m <sup>2</sup> )		이상용 또는지구	소유자		용도	구조	동수	층수		연면적	소유자		목적	내용		권리 종류	권리자		내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지하	지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금액 등	목적		
						이상용 또는지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금액 등	목적	
수용	1	1	용해동	323-14	대	179.00	179.00	정비구역	이미경	전남 목포시 용당로284번길 15	단독주택	시멘트 벽돌조	1	1	1	108.51	이미경	전남 목포시 용당로284번길 15										
수용	2	2	용해동	323-15	전	147.00	147.00	정비구역	은진옥	서울시 관악구 남성대역3길24, 비전부동산 김도환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	1	0	1	86.84	은진옥	서울시 관악구 남성대역3길24, 비전부동산 김도환										
수용	3	3	용해동	323-16	대	212.00	212.00	정비구역	허옥수	전남 목포시 용당로284번길 15-2	단독주택	시멘트 벽돌조	1	0	2	133.13	허옥수	전남 목포시 용당로284번길 15-2										
수용	4	4	용해동	323-17	대	197.00	197.00	정비구역	조순심	전남 목포시 용당로284번길 17-1	단독주택	시멘트 벽돌조	1	0	2	148.96	조순심	전남 목포시 용당로284번길 17-1										
수용	5	5	용해동	323-18	대	150.00	150.00	정비구역	김정옥	경기도 안산시 일죽중원남길6-1, 8층 201호(사동, 그레이스빌)	단독주택	시멘트 벽돌조	1	0	1	87.01	김정옥	경기도 안산시 일죽중원남길6-1, 8층 201호(사동, 그레이스빌)										
수용	6	6	용해동	324-2	대	151.00	151.00	정비구역	장순호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 18-2	단독주택	시멘트 벽돌조	1	0	1	78.78	장순호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 18-2										
수용	7	7-1	용해동	324-3	전	136.00	136.00	정비구역	유인홍	전남 목포시 영월로258번길 15, 102동, 1101호 (용해동 용해하이츠맨션)							건물 기타물품이나 수목의 소유	용해동 주민협의체	근저당	당업자	용해동 주민협의체	전남 목포시 용당로308(용해동)	65,000,000	토지				
수용	7-2	용해동	324-25	전	9.00	9.00	정비구역	이상현	전남 목포시 영산로270번길 12-1(용당동)																			
수용	7-3	용해동	327-29	전	76.00	76.00	정비구역	김향용	전남 목포시 소영길 20-1 1층 2호(용당동)																			
수용	7-4	용해동	324-32	전	132.00	132.00	정비구역	김영심	전남 목포시 노적봉길25번길 13-1, 402호(죽주동, 한성리지빌)								건물 기타물품이나 수목의 소유	용해동 주민협의체	근저당	당업자	용해동 주민협의체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308(용해동)	65,000,000	토지				
수용	7-5	용해동	324-33	전	132.00	132.00	정비구역	김미정	전남 목포시 죽곡천로122번길 18, 801호(죽곡동, 혜송아파트)								건물 기타물품이나 수목의 소유	용해동 주민협의체	근저당	당업자	용해동 주민협의체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308(용해동)	65,000,000	토지				
수용	7-6	용해동	324-34	전	132.00	132.00	정비구역	유평민	전라남도 목포시 영월로7번길 7(산정동)								건물 기타물품이나 수목의 소유	용해동 주민협의체	근저당	당업자	용해동 주민협의체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308(용해동)	65,000,000	토지				
수용	8	8	용해동	324-16	대	185.00	185.00	정비구역	이귀단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9 (용해동)	단독주택	시멘트 벽돌조	1	0	2	129.99	이귀단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9 (용해동)			근저당	당업자	한구양계업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정로367(면목동, 신용해시점)	72,000,000	토지+건물		
수용	9	9	용해동	324-17	대	151.00	151.00	정비구역	오순원A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22	단독주택	시멘트 벽돌조	1	0	2	123.18	오순원A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22			근저당	당업자	용해동 주민협의체	목포시 용해동 360-4	39,000,000	토지+건물		
수용	10	10	용해동	324-18	대	172.00	172.00	정비구역	서경옥	전남 무안군 용탄면 현재길 17	단독주택	시멘트 벽돌조	1	0	2	131.71	서경옥	전남 무안군 용탄면 현재길 17			근저당	당업자	산정새마을금고	전남 목포시 청호로 106(산정동)	54,000,000	토지+건물		
수용	11	11	용해동	324-26	전	57.00	57.00	정비구역	이승복	광주광역시 서구 용곡로1번길 9(용당동)																		
수용			용해동	325-9	대	165.00	165.00	정비구역	이승복	광주광역시 서구 용곡로1번길 9(용당동)	단독주택	시멘트 벽돌조	1	0	1	52.56	이승복	광주광역시 서구 용곡로1번길 9(용당동)										
수용	12	12-1	용해동	325-1	대	209.00	209.00	정비구역	조명란	전남 목포시 용당로276(조아리해안유원지)주조	단독주택	시멘트 벽돌조	1	0	1	84.96	조명란	전남 목포시 용당로276(조아리해안유원지)주조										
수용	12-2	용해동	325-1					정비구역	조명산	전남 무안군 삼향읍 용산길 137-3																		
수용	13	13	용해동	325-3	대	477.00	477.00	정비구역	주말레	전남 목포시 용당로284번길 13 (용해동)	단독주택	목조	1	0	1	48.92	주말레	전남 목포시 용당로284번길 13 (용해동)										
수용			용해동	325-3				정비구역	주말레	전남 목포시 용당로284번길 13 (용해동)	단독주택	시멘트 벽돌조	1	0	1	155.17	주말레	전남 목포시 용당로284번길 13 (용해동)										
수용			용해동	325-3				정비구역	주말레	전남 목포시 용당로284번길 13 (용해동)	단독주택	시멘트 벽돌조	1	0	1	66.81	주말레	전남 목포시 용당로284번길 13 (용해동)										
수용	14	14-1	용해동	325-4	대	390.00	390.00	정비구역	정영자	전남 목포시 원산중앙로109, 501동 연산동 주공5단지(아파트)																		
수용	14-2	용해동	325-4					정비구역	김현선																			
수용	14-3	용해동	325-4					정비구역	김효정																			
수용	14-4	용해동	325-4					정비구역	김수연																			
수용	14-5	용해동	325-4					정비구역	김우창																			
수용	14-6	용해동	325-4					정비구역	김양현																			
수용	15	15	용해동	325-8	전	43.00	43.00	정비구역	장부선																			
수용	16	16	용해동	325-10	대	119.00	119.00	정비구역	양수미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 1길2, 110동502호(용산동, 계룡리슈빌)																		
수용	17	17	용해동	325-11	대	142.00	142.00	정비구역	조영남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8번길6(용해동)	단독주택	목조	1	0	1	29.75	조영남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8번길6(용해동)										

수용	18	18-1	용해동	325-12	대	24.00	24.00	정비구역	박성남	전남목포시산정로27 1,1중(산정동)									입류	목포시	박성남지분 전부입류	토지		
수용		18-2	용해동	325-12				정비구역	조영남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8번길6(용해동)														
수용		18-3	용해동	325-12				정비구역	주기조															
수용		18-4	용해동	325-12				정비구역	김순례A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8번길4(용해동) 김순례														
수용		18-5	용해동	325-12				정비구역	하막동	전남 목포시 영당로284번길 9-1														
수용	19	19	용해동	325-13	대	125.00	125.00	정비구역	추선희	전남 목포시 산정로268-3, 101동 1407호(산정동, 단화아파트)	단독주택	시멘트 블록조	1	0	1	73.31	추선희	전남 목포시 산정로268-3, 101동 1407호(산정동, 단화아파트)						
수용	20	20	용해동	325-14	대	70.00	70.00	정비구역	문영진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8번길 3-1(용해동)	단독주택	시멘트 블록조	1	0	2	83.70	문영진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8번길 3-1(용해동)	근저당 설정	용해신협 입류조합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 8번길 3-1(용해동)	15,600,000	토지+ 건물	
수용			용해동	325-14				정비구역	문영진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8번길 3-1(용해동)								근저당 설정	용해신협 입류조합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 8번길 3-1(용해동)	32,500,000	토지+ 건물		
수용	21	21	용해동	325-15	대	185.00	185.00	정비구역	한광차	전남 목포시 용해동 325-15	단독주택	시멘트 블록조	1	0	1	61.82	한광차	전남 목포시 용해동 325-15						
수용	22	22	용해동	325-16	대	247.00	247.00	정비구역	허막동	전남 목포시 영당로284번길 9-1(용해동)	단독주택	시멘트 블록조	1	0	1	44.63	허막동	전남 목포시 영당로284번길 9-1(용해동)						
수용			용해동	327-19	전	1137.00	540.00	정비구역	허막동	전남 목포시 영당로284번길 9-1(용해동)														
수용	23	23	용해동	325-17	대	36.00	36.00	정비구역	유죽업	전남 목포시 영당로284번길 9(용해동)														
수용	24	24	용해동	325-21	대	165.00	165.00	정비구역	서민호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8-1(용 해동)	단독주택	시멘트 블록조	1	0	1	55.29	서민호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8-1(용 해동)	근저당 설정	용해신협	전남 목포시 용해동 360-4	39,000,000	토지+ 건물	
수용			용해동	325-21				정비구역	서민호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8-1(용 해동)						서민호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8-1(용 해동)	근저당 설정	김병승	전남 목포시 남악2로22 번길 10, 105동 503호(육암 동 한라비발디 아파트)	18,000,000	토지+ 건물		
수용			용해동	325-21				정비구역	서민호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8-1(용 해동)						서민호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8-1(용 해동)	근저당 설정	조갑승	전남 목포시 용당로77번 32(산정동)	13,000,000	토지+ 건물		
수용			용해동	325-21				정비구역	서민호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8-1(용 해동)						서민호	전남 목포시 영월마을로18-1(용 해동)	근저당 설정	주명자	전남 시암군 용해동 압해로2길2 9	18,000,000	토지+ 건물		
수용	25	25	용해동	325-25	대	210.00	210.00	정비구역	고윤미	전남 목포시 남해로 58(1중)	단독주택	시멘트 블록조	1	0	1	93.96	고윤미	전남 목포시 남해로 58(1중)	근저당 설정	삼학새마을 금고	전남 목포시 상동 855	52,000,000	토지+ 건물	
수용	26	26	용해동	325-26	대	231.00	231.00	정비구역	박순하	전남 목포시 영산로 223(산정동)	단독주택	시멘트 블록조	1	0	1	80.90	박순하	전남 목포시 영산로 223(산정동)	가압류 유한회사	에네디 선릉로 642 3층 301호(양성 동, 서경빌딩)	11,853,220	토지+ 건물		
수용			용해동	325-26				정비구역	박순하	전남 목포시 영산로 223(산정동)						박순하	전남 목포시 영산로 223(산정동)	근저당 설정	목포무안 시암출장 소초 합	전남 목포시 영산로 223번길 38-1	36,000,000	토지+ 건물		
수용	27	27	용해동	325-34	대	163.00	163.00	정비구역	박정수	전남 목포시 영당로284번길 11-1(용해동)	단독주택	철근 콘크리트 조 건물의 소유	1	0	1	36.00	박정수	전남 목포시 영당로284번길 11-1(용해동)	철근 콘크리트 조 건물의 소유	목포농협 조합	목포시 상동 1095-6	30,800,000	토지+ 건물(차 단) 토지(상 권)	
수용	28	28	용해동	325-39	도	51.00	12.75	정비구역	박성남	전남목포시산정로27 1,1중(산정동)								입류	목포시		박성남지분 전부입류	토지		
수용	29	29-1	용해동	325-40	대	35.00	35.00	정비구역	박성남	전남목포시산정로27 1,1중(산정동)								입류	목포시		박성남지분 전부입류	토지		
수용		29-2	용해동	325-40				정비구역	조영남															
수용		29-3	용해동	325-40				정비구역	주기조															
수용		29-4	용해동	325-40				정비구역	하막동															
수용	30	30	용해동	326	대	26.00	26.00	정비구역	김춘근	전남 목포시 영월로244(용해동)														
수용			용해동	326-1	도	34.00	34.00	정비구역	김춘근	전남 목포시 영월로244(용해동)														
수용	31	31-1	용해동	327	전	105.00	105.00	정비구역	손란자	광주광역시남구대남 대로416-1(용산동)								손란자 지분가 입류	서울보증 회사	서울중로구 연지동136- 74 (광주지점)	7,426,130	토지		
수용		31-2	용해동	327				정비구역	신연식									손란자 지분가 입류	서울보증 회사	서울중로구 연지동136- 74 (중부지역본 무관주재권)	45,584,260	토지		









수용	110	110	301-301	정비구역	김효은	광주광역시 서구 송풍로30, 104동 803호 (용암동, SK뷰아파트)	54.12	김효은	광주광역시 서구 송풍로30, 104동 803호 (용암동, SK뷰아파트)										
수용	111	111	301-302	정비구역	김춘례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서촌길 54-1, 102호 (연합동, 사교직원사택)	65.20	김춘례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서촌길 54-1, 102호 (연합동, 사교직원사택)										
수용	112	112	301-303	정비구역	이현순	광주광역시 서구 영화로45길 17, 110동 601호 (화정동, 라인동산아파트)	65.20	이현순	광주광역시 서구 영화로45길 17, 110동 601호 (화정동, 라인동산아파트)										
수용			303-504	정비구역	이현순	광주광역시 서구 영화로45길 17, 110동 601호 (화정동, 라인동산아파트)	54.12	이현순	광주광역시 서구 영화로45길 17, 110동 601호 (화정동, 라인동산아파트)										
수용	113	113	301-304	정비구역	이대례사	전남 목포시 양을산길 12, 301동 304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54.12	이대례사	전남 목포시 양을산길 12, 301동 304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수용	114	114	301-305	정비구역	나경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면어로30-1	54.12	나경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면어로30-1										
수용	115	115	301-306	정비구역	올레스더채원	캐나다아파트 샵 201 2250 웨스브룩을 번쿠버 비씨주	65.20	올레스더채원	캐나다아파트 샵 201 2250 웨스브룩을 번쿠버 비씨주										
수용	116	116	301-401	정비구역	주식회사송화원강경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4 햇빛마을 2015-2003	54.12	주식회사송화원강경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4 햇빛마을 2015-2003	주택임대차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중의로19길(중앙동)주진남지역(본부)	35,000,000						토지+건물
수용			302-504	정비구역	주식회사송화원강경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4 햇빛마을 2015-2003	65.99	주식회사송화원강경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4 햇빛마을 2015-2003										
수용			304-401	정비구역	주식회사송화원강경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4 햇빛마을 2015-2003	65.99	주식회사송화원강경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4 햇빛마을 2015-2003	압류	목포시								
수용			305-302	정비구역	주식회사송화원강경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4 햇빛마을 2015-2003	54.77	주식회사송화원강경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4 햇빛마을 2015-2003										
수용			305-303	정비구역	주식회사송화원강경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4 햇빛마을 2015-2003	54.77	주식회사송화원강경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4 햇빛마을 2015-2003	압류	목포시								
수용			306-105	정비구역	주식회사송화원강경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4 햇빛마을 2015-2003	65.99	주식회사송화원강경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34 햇빛마을 2015-2003	압류	목포시								
수용	117	117	301-402	정비구역	오현하	전남 목포시 양을산길 12, 301동 402호(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65.20	오현하	전남 목포시 양을산길 12, 301동 402호(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수용	118	118-1	301-403	정비구역	나옥순	광주광역시 북구 용동로 100, 107동 1403호 (우산동, 현대아파트)	65.20	나옥순	광주광역시 북구 용동로 100, 107동 1403호 (우산동, 현대아파트)										
수용		118-2	303-301	정비구역	조은이	광주광역시 북구 용동로 100, 107동 1403호 (우산동, 현대아파트)	54.12	조은이	광주광역시 북구 용동로 100, 107동 1403호 (우산동, 현대아파트)	근저권설정	당첨	광주광역시 북구 용동로 225(대인동)상부지점	40,700,000						토지+건물
수용	119	119	301-404	정비구역	전대성	광주광역시 서구 영화로 59번길 12, 202동 901호(금호동, 진흥더루벤스)	54.12	전대성	광주광역시 서구 영화로 59번길 12, 202동 901호(금호동, 진흥더루벤스)										
수용	120	120	301-405	정비구역	김진	전남 목포시 양을산길 12, 301동 405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54.12	김진	전남 목포시 양을산길 12, 301동 405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근저권설정	당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26, 동관9층, 11층(수하동, 미래에셋타워빌딩)	48,000,000						토지+건물
수용			301-405	정비구역	김진	전남 목포시 양을산길 12, 301동 405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54.12	김진	전남 목포시 양을산길 12, 301동 405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근저권설정	당첨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26, 동관9층, 11층(수하동, 미래에셋타워빌딩)	12,000,000						토지+건물
수용	121	121-1	303-302	정비구역	김미옥	전남목포시삼학로30 3-3,8동1505호(용해동, 동아아파트)	65.20	김미옥	전남목포시삼학로30 3-3,8동1505호(용해동, 동아아파트)										
수용		121-2	301-406	정비구역	노아주	전남목포시삼학로30 3-3,8동1505호(용해동, 동아아파트)	65.20	노아주	전남목포시삼학로30 3-3,8동1505호(용해동, 동아아파트)										
수용	122	122	301-501	정비구역	윤현섭	경남양산시물금읍범어리2680-4(천왕1동, 우편주소)	54.12	윤현섭	경남양산시물금읍범어리2680-4(천왕1동, 우편주소)										
수용	123	123	301-502	정비구역	주인숙	전남 목포시 연산로 535번길, 106동 1207호(상동, 호반리젠시빌)	65.20	주인숙	전남 목포시 연산로 535번길, 106동 1207호(상동, 호반리젠시빌)										
수용			302-201	정비구역	주인숙	전남 목포시 연산로 535번길, 106동 1207호(상동, 호반리젠시빌)	65.99	주인숙	전남 목포시 연산로 535번길, 106동 1207호(상동, 호반리젠시빌)										
수용	124	124	301-503	정비구역	김윤길	전남 목포시 양을산길 12, 301동 503호(용해동,	65.20	김윤길	전남 목포시 양을산길 12, 301동 503호(용해동,										







수용	195	195	304-402		정비구역	조찬호	충남논산시연무읍안성동250-103동107호(안성리, 월아아파트)								54.77	조찬호	충남논산시연무읍안성동250-103동107호(안성리, 월아아파트)			근저설정	주식회사신원은행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9길20(태평로2가)(목포지점)	45,600,000	토지+건물		
수용	196	196	304-403		정비구역	홍소라	전남 목포시 양율산길12 304동 403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54.77	홍소라	전남 목포시 양율산길12 304동 403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근저설정	주식회사신원은행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9길20(태평로2가)(목포지점)	36,000,000	토지+건물		
수용	197	197	304-405		정비구역	남훈현	광주시 서구 상우공원로35, 102동, 1410호 (지평동, 상우1차우미아파트)								65.99	남훈현	광주시 서구 상우공원로35, 102동, 1410호 (지평동, 상우1차우미아파트)									
수용	198	198	304-501		정비구역	류지운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4 (용해동)								65.99	류지운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4 (용해동)									
수용	199	199	304-502		정비구역	배소연	대주시 달서구 월배로 11길 9-16, 102호 (용연동, 화성파크리젠스)								54.77	배소연	대주시 달서구 월배로 11길 9-16, 102호 (용연동, 화성파크리젠스)			근저설정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36-3(목포지점)	7,910,000	토지+건물		
수용	200	200	304-503		정비구역	정윤근	서울 중랑구 상봉로15길 54(면목동)								54.77	정윤근	서울 중랑구 상봉로15길 54(면목동)			근저설정	법륜은행사동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20(충정로1가)(용명동지점)	36,000,000	토지+건물		
수용	201	201	304-504		정비구역	박수란	전남목포시현당로289번길7-301동1001호 (옥암동, 옥암벨리시아)								65.99	박수란	전남목포시현당로289번길7-301동1001호 (옥암동, 옥암벨리시아)									
수용	202	202	304-505		정비구역	주식회사엘프	대천시 우성구 가청로65, 103동 1503호 (산성동, 대림두레아파트)								65.99	주식회사엘프	대천시 우성구 가청로65, 103동 1503호 (산성동, 대림두레아파트)									
수용	203	203	304-506		정비구역	박정은	전남 목포시 은남길 6(용해동)								54.77	박정은	전남 목포시 은남길 6(용해동)									
수용	204	204	305-101		정비구역	김태은	전남 목포시 양율산길12 305동 101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65.99	김태은	전남 목포시 양율산길12 305동 101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근저설정	목포농협은행	전라남도목포시석영동556-1(용해지점)	34,800,000	토지+건물		
수용			306-503		정비구역	김태은	전남 목포시 양율산길12 305동 101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54.77	김태은	전남 목포시 양율산길12 305동 101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근저설정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1(충로1가)	36,960,000	토지+건물		
수용	205	205	305-102		정비구역	황선경	광주시 서구월드길4 양로197번길12-105동103호(영은동, 상우엘리제)								47.57	황선경	광주시 서구월드길4 양로197번길12-105동103호(영은동, 상우엘리제)									
수용	206	206	305-103		정비구역	변영희	전남 목포시 양율로21 102동 801호 (산성동, 중원나이스빌)								47.57	변영희	전남 목포시 양율로21 102동 801호 (산성동, 중원나이스빌)									
수용	207	207	305-104		정비구역	박재형	전남 목포시 소영길16 (용당동)								65.99	박재형	전남 목포시 소영길16 (용당동)									
수용	208	208	305-105		정비구역	송윤성	전남 나주시 노안면 확산용산길74								65.99	송윤성	전남 나주시 노안면 확산용산길74									
수용	209	209	305-106		정비구역	정지윤	전남 목포시 경기두로13번길 12, 103호, 101호 (옥암동, 코아루아파트)								47.57	정지윤	전남 목포시 경기두로13번길 12, 103호, 101호 (옥암동, 코아루아파트)			근저설정	주식회사광주은행	광주광역시중구채널로225(대인동)	14,950,000	토지+건물		
수용	210	210	305-201		정비구역	채비아	인천계양구홍서로377-215동 307호 (차전동, 현대아파트)								65.99	채비아	인천계양구홍서로377-215동 307호 (차전동, 현대아파트)									
수용	211	211	305-202		정비구역	김영숙	전남 목포시 산정로 196, 4층(산정동)								54.77	김영숙	전남 목포시 산정로 196, 4층(산정동)									
수용	212	212-1	305-203		정비구역	최길배	광주광역시서구회개1로78번길8,505동205호 (금호동, 금호호반리젠시빌)								54.77	최길배	광주광역시서구회개1로78번길8,505동205호 (금호동, 금호호반리젠시빌)									
수용		212-2	305-203		정비구역	김육희										김육희										
수용	213	213	305-204		정비구역	조상철	전남 신안군 비금면 임리길 27								65.99	조상철	전남 신안군 비금면 임리길 27			근저설정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36-3(목포지점)	8,810,000	토지+건물		
수용	214	214	305-205		정비구역	조문희	전남 목포시 양율산길12 305동 206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65.99	조문희	전남 목포시 양율산길12 305동 206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수용	215	215	305-206		정비구역	김길환	전남 목포시 양율산길12 305동 305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54.77	김길환	전남 목포시 양율산길12 305동 305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근저설정	용해신용협동조합	전라남도목포시용해동360-4	32,500,000	토지+건물		
수용	216	216	305-304		정비구역	김팔남	전남 목포시 양율산길12 305동 304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65.99	김팔남	전남 목포시 양율산길12 305동 304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수용	217	217	305-305		정비구역	윤삼수	전남 목포시 양율산길12 305동 305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65.99	윤삼수	전남 목포시 양율산길12 305동 305호 (용해동, 용해3단지아파트)									
수용	218	218	305-306		정비구역	구선화	전남 목포시 연세별로1번길79, 105호, 602호 (연산동, 천년기아파트)								54.77	구선화	전남 목포시 연세별로1번길79, 105호, 602호 (연산동, 천년기아파트)									
수용	219	219	305-401		정비구역	박소형	전남 목포시 소영길 16(용당동)								65.99	박소형	전남 목포시 소영길 16(용당동)									
수용	220	220	305-402		정비구역	김미자	전남 목포시 용당로 305번길 52								54.77	김미자	전남 목포시 용당로 305번길 52									
수용	221	221	305-403		정비구역	김희주	전주시 덕진구 북내길29, 103동501호 (송전동, 송전드림채아파트)								54.77	김희주	전주시 덕진구 북내길29, 103동501호 (송전동, 송전드림채아파트)			근저설정	법륜은행사동주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20(충정로1가)(용명동지점)	36,000,000	토지+건물		
수용	222	222	305-404		정비구역	최성휴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부로 860-23								65.99	최성휴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주부로 860-23									
수용	223	223	305-405		정비구역	주식회사에코랜드	전남나주시북화면선동길149(우편물주소), 광주서구마재로57,101동1001호(금호동, 마재마을주은아파트)								65.99	주식회사에코랜드	전남나주시북화면선동길149(우편물주소), 광주서구마재로57,101동1001호(금호동, 마재마을주은아파트)									









목포시 공고 제2022-62호

「목포시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개폐 청구에 대한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목 포 시 장 (직인)

다 음

연 도	19세 이상 주민총수 (등록외국인 영주권자 포함)	19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 수	비 고
2022	180,893명	180,790명	6,026명 이상	19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의 30분의1 이상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목포시 주민 조례 제·개폐 청구 조례」에 따른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 수는 2022.1.12.일까지 유효

「목포시 주민발안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개폐 청구에 대한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목 포 시 장 (직인)

다 음

연 도	18세 이상 주민총수 (등록외국인 영주권자 포함)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 수	비 고
2022	183,355명	183,249명	2,617명 이상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1 이상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목포시 주민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 수는 2022.1.13.일부터 유효

목포시 공고 제2022 - 50호

## 2022년도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

「주민투표법」 제9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목포시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제5조에 따라 2022년도 목포시 주민투표·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단위 : 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서명 주민의 수	비 고
180,790	16,435	총수의 1/11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180,790) = 19세 이상 주민 수(180,893) - 19세 이상 주민 중 선거권이 없는 자(268) + 19세 이상의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165)

### 2.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단위 : 명)

주민소환 투 표 청 구 권 자 총 수	청구서명 주민의 수								비 고
	시 장 (15%이상)	목포시의회 의원(20%이상)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다 선거구	라 선거구	마 선거구	바 선거구	사 선거구	
180,790	27,118	6,284	4,445	3,574	4,601	3,697	6,034	7,520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180,790) = 19세 이상 주민 수(180,893) - 19세 이상 주민 중 선거권이 없는 자(268) + 19세 이상의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165)

붙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대상별 세부내역 각 1부.

2022년 1월 10일

목 포 시 장

## 주민소환투표대상(목포시장)

(단위:명)

구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 서명인수	최소 서명인수	비고 (15/100)
계	180,790	27,118명 이상		
용당1동	9,238		1,386	1,386
용당2동	4,559		684	684
연동	4,170		626	626
산정동	7,829		1,175	1,175
연산동	7,827		1,175	1,175
원산동	10,489		1,574	1,574
대성동	4,080		612	612
목원동	6,848		1,028	1,028
동명동	4,769		716	716
삼학동	5,042		757	757
만호동	2,585		388	388
유달동	3,668		551	551
죽교동	2,708		407	407
북향동	7,611		1,142	1,142
용해동	13,108		1,807	1,967
이로동	8,458		1,269	1,269
상동	17,419		1,807	2,613
하당동	10,031		1,505	1,505
신흥동	13,592		1,807	2,039
삼향동	3,915		588	588
옥암동	8,836		1,326	1,326
부흥동	6,825		1,024	1,024
부주동	17,183		1,807	2,578

1. 청구서명인수: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의100분의15이상
2. 최소서명인수:시장의주민소환투표청구를위하여해당선거구의읍면동의전체수가 3개 이상일 경우 1/3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할 서명인수로는 해당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단, 최소서명인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총수의 5/10,000미만인 경우는 5/10,000로하고, 100/10,000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10,000으로 함.)

주민소환투표대상(목포시의회 의원)

(단위:명)

구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 서명인수	최소 서명인수	비고 (20/100)
총계	180,790			
소 계	31,424	6,284명 이상		
가 선거구	연산동	7,827		314 1,566
	원산동	10,489		314 2,098
	용해동	13,108		314 2,622
	소 계	22,228	4,445명 이상	
나 선거구	산정동	7,829		222 1,566
	대성동	4,080		222 816
	죽교동	2,708		222 542
	북향동	7,611		222 1,523
	소 계	17,870	3,574명 이상	
다 선거구	목원동	6,848		179 1,370
	동명동	4,769		179 954
	만호동	2,585		179 517
	유달동	3,668		179 734
	소 계	23,009	4,601명 이상	
라 선거구	용당1동	9,238		230 1,848
	용당2동	4,559		230 912
	연동	4,170		230 834
	삼학동	5,042		230 1,009
	소 계	18,489	3,697명 이상	
마 선거구	이로동	8,458		185 1,692
	하당동	10,031		185 2,007
	소 계	30,170	6,034명 이상	
바 선거구	상동	17,419		302 3,484
	삼향동	3,915		302 783
	옥암동	8,836		302 1,768
	소 계	37,600	7,520명 이상	
사 선거구	신흥동	13,592		376 2,719
	부흥동	6,825		376 1,365
	부주동	17,183		376 3,437

1. 청구서명인수: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총수의100분의20이상
2. 최소서명인수:주민소환투표청구를위하여해당선거구안의읍면동의전체수가3개 이상일 경우 1/3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할 서명인수로는 선거구안의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이상(단, 최소서명인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총수의 5/10,000미만인 경우는 5/10,000로하고, 100/10,000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10,000으로 함.)

목포시 공고 2022- 56호

## 2022년 빈집정비 지원 사업 공모 시행 공고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미관저해 및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2년 빈집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0.

### 목 포 시 장

####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2022년 빈집정비 지원 사업
- 나. 사업목적: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다. 사업량 및 사업비: 40동, 20백만원(시비100%)
- 라.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 변동 가능)
- 마. 사업내용: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 철거

#### 2. 지원내용

- 가. 신청자격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 재산세 과세증명서, 매매계약서를 통해 사실상 소유를 증명한 자
  - 나. 대상주택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 ※ 단독주택 우선 지원

다. 신청조건

- 철 거 -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 꽃밭 등) 제공 동의
- 리모델링 - 도시저소득층 우선공급 및 시세 80% 임대제공 동의

라. 지원금액

- 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범위 초과시 자부담 발생)

마. 제외대상

- 법인 소유 건축물, 공공임대주택, 비주거용 건축물, 별장 등
- 빈집(무허가 건축물) 리모델링을 신청하는 경우 (단, 철거는 신청가능)
- 건축물에 압류, 근저당권(지상권 포함)이 설정된 경우
- 주 건축물을 제외한 창고 등 부속건축물만 철거하는 경우
- 건축을 위하여 철거를 신청하는 경우

바. 우선순위

- 주택노후도 및 주거환경 저해요인(붕괴우려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빈집
- 주요 간선도로변 빈집
- 건축물 용도(주택우선 지원)
- 목포시민 우선 지원

**3.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1. ~ 12. 1.

나. 공 고 : 목포시 홈페이지

다. 신청방법 : 빈집이 위치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빈집정비 사업 신청시 소유자가 직접 신청(원칙)

라. 대상자 선정

※ 목포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이 후 대상자 확정

마.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빈집정비 지원 사업(철거, 리모델링) 동의서 각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소유권 증빙서류(토지, 건축물 등기 및 기타서류) 1부.

**4. 선정결과 통보**

가. 시기 : 2022. 1. ~ 12. 상시접수(접수 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방법 : 선정자 개별통지

※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선정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빈집정비 포기 간주 ⇒ 후순위자(대기자) 선정

**5. 사업비 지급 및 정산서 제출**

가. 선정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나. 사업완료시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서류와 정산보고서 제출

**6. 기타 참고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과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 2022년 빈집정비 지원 사업 신청서

대상 건축물 위치						
신청자	주소					
	성명	(연락처 : )				
	생년월일					
빈집용도		주택 /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화장실 등)				
빈집정비지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철거		<input type="checkbox"/> 리모델링		
정비신청 내용						
구조 및 면적	주구조	지붕		면적(㎡)	건축년도	철거예정
		슬레이트	기타			
1동						
2동						
미거주(미사용) 시기		년 월 이후 미거주(미사용)				

## &lt;전경사진&gt;

상기 건축물의 소유자로 2022년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하며, 본 사업으로 인해 추후 민·형사상의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소유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주민등록증 사본 및 소유권 증빙서류, 위치도**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각1부.**

**목포시장 귀하**

[붙임 2]

## 빈집정비 지원사업(철거) 동의서

- 건물위치 :
- 소 유 자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건 물 현 황

용 도	면 적(m <sup>2</sup> )	구 조	기 타

위 빈집 소유자(관리자)로서 건물노후 및 화재 등으로 건물사용이 불가능하여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계속 방치할 경우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장애가되므로 상기 건물을 철거 후 3년간 주민편의시설(주차장, 꽃밭, 텃밭 등)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며, 건물 내 집기류 및 기타 보관품 처분에 대하여도 목포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주 소 :

동 의 자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 관계 :

첨부 : 본인서명확인서(인감증명서) 1부.

### 목포시장 귀하

[붙임 2]

# 빈집정비 지원사업(리모델링) 동의서

- 건물위치 :
- 소 유 자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건 물 현 황

용 도	면 적(m <sup>2</sup> )	구 조	기 타

위 빈집 소유자(관리자)로서 목포시 빈집정비 지원사업 중 리모델링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건물을 리모델링 공사 후 3년간 시세80% 임대제공에 동의하며, 건물 내 집기류 및 기타 보관품 처분에 대하여도 목포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주 소 :  
 동 의 자 : (인)  
 연 락 처 :  
 소유자와 관계 :

첨부 : 본인서명확인서(인감증명서) 1부.

## 목포시장 귀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목포시 빈집정비 지원사업
-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 또는 가족관계 확인
국민기초수급대상, 차상위	자격조사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주택조사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주민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 부동산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 사업 및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2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약서

■ 본인은 목포시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을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발생할 시 지원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되는 지원금을 즉시 반환함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목포시 공고 제 2022 - 21호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0.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 14조 [별표2] 및 같은조례 제 17조 개정 에 따라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환경수도사업단으로, 상하수도사업단장 에 서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변경을 위하여「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 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환경수도사업단 명칭변경 (안 제1조)
  -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환경수도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관리·운영하고자 함.
- 환경수도사업단장 명칭변경 (안 제3조)
  - 상하수도사업단장에서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 를 현실에 맞게 관리·운영하고자 함.

○ 환경수도사업단 및 사업단장 명칭변경 (안 별지 제1~5호서식)

- 환경수도사업단 및 환경수도사업단장으로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관리·운영하고자 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5. 관련법령 및 관련안 : 붙임3

○ 「수도법」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6. 입법예고 기간 : 2022. 1. 10. ~ 1. 30.(21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월 30까지 목포시장 (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549, 전남 무안군 몽탄로 1149 (몽탄면)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수도과(몽탄정수장)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295), 직접방문 등

##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수도과(☎  
061-270-4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1**    **개정 조례안**

목포시 조례 제       호

·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을 “목포시 환경 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로 한다.

제1조(목적) 중 수질검사를 “환경수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실시 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검사의 의뢰) 중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서 정하는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환경수도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의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 12. 27>

### 수질 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 1.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표자 (성명)		③생년월일	
④ 주 소	(전화번호 )		

#### 2. 검 체 내 역

⑤ 검 체 명			
⑥ 검 사 목 적(용도)			
⑦ 검체채취방법	(용기: , 용량: )		
⑧ 검사의뢰항목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 귀하

#### <첨부>

- 검사용 시료 소요량  
(세균학적 검체와 이·화학적 검체는 동일하여야 한다)

수 수 료

조례 제4조에 따른 수수료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 12. 27>

건 명	
신 청 인	
주 소	
검 사 항 목	
수 수 료	
처 리 기 간	년 월 일 까지

접수번호 :

\_\_\_\_\_

수질검사 신청 접수증

\_\_\_\_\_

- ※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접수증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 ※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접수담당자 : (인)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 12. 27>

납입고지서 (은행보관용)				영수필통지서(Ⅰ) (목포시 수도과 통보용)				영수필통지서(Ⅱ) (목포시 환경수도사업단 통보용)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관)		(항)		(관)		(항)		(관)		(항)		(관)		(항)	
(목)				(목)				(목)				(목)			
금				금				금				금			
단				단				단				단			
위 금액을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제4조에 따라 고지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람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목포시상수도사업회계금고				목포시상수도사업회계금고인				목포시상수도사업회계금고인				목포시상수도사업회계금고인			
년 월 일				목포시환경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귀하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 귀하							
(납부자) 귀하				납부자				납부자				(납부자) 귀하			
				징수관 인 취급자 인				징수관 인 취급자 인							
				수입금출납원 인 기 장 인				수입금출납원 인 기 장 인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목포시 <u>상하수도사업단</u>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p> <p>제1조(목적) 수질검사를 <u>상하수도사업단</u>(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검사의 의뢰) 별표 1에서 정하는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u>상하수도사업단장</u>(이하 “단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별지 1~5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1</th> <th style="text-align: center;">현행2</th> </tr> </thead> <tbody> <tr> <td>별지 제1호서식 수질검사신청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장</td> </tr> <tr> <td>별지 제2호서식 수질검사신청접수증</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장</td> </tr> <tr> <td>별지 제3호서식 검사성적서 교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장</td> </tr> <tr> <td>별지 제4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장</td> </tr> <tr> <td>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관련</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장</td> </tr> </tbody> </table>	구 분	현행1	현행2	별지 제1호서식 수질검사신청서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장	별지 제2호서식 수질검사신청접수증	-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장	별지 제3호서식 검사성적서 교부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장	별지 제4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장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관련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장	<p>--- <u>환경수도사업단</u> -----</p> <p>-----</p> <p>제1조(목적) ----- <u>환경수도사업단</u>-----</p> <p>-----</p> <p>-----</p> <p>제3조(검사의 의뢰) -----</p> <p>----- <u>환경수도사업단장</u>-----</p> <p>-----</p> <p>[별지 1~5호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1</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정2</th> </tr> </thead> <tbody> <tr> <td>별지 제1호서식 수질검사신청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td> </tr> <tr> <td>별지 제2호서식 수질검사신청접수증</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td> </tr> <tr> <td>별지 제3호서식 검사성적서 교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td> </tr> <tr> <td>별지 제4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td> </tr> <tr> <td>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관련</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td> <td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td> </tr> </tbody> </table>	구 분	개정1	개정2	별지 제1호서식 수질검사신청서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	별지 제2호서식 수질검사신청접수증	-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	별지 제3호서식 검사성적서 교부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	별지 제4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관련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
구 분	현행1	현행2																																			
별지 제1호서식 수질검사신청서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장																																			
별지 제2호서식 수질검사신청접수증	-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장																																			
별지 제3호서식 검사성적서 교부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장																																			
별지 제4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장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관련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	목포시상하수도사업단장																																			
구 분	개정1	개정2																																			
별지 제1호서식 수질검사신청서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																																			
별지 제2호서식 수질검사신청접수증	-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																																			
별지 제3호서식 검사성적서 교부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																																			
별지 제4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재교부신청서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 관련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	목포시환경수도사업단장																																			

**붙임3**    **관련법령 및 관련안**

**수도법**

-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①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대한 수량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을 실시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사업소 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두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07·12·31, 2008·7·28, 2011·6·20>

**제17조(소관사무)** 사업단·소별 단장 및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수도사업단<개정 2011·6·20, 2018.12.17., 2019.12.23>
- 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세입 및 자재관리, 상수도설치, 상수도시설 관리, 수질검사, 몽탄정수장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2]**

<개정 2007·12·31, 2008·7·28, 2009·8·3, 2010·3·29, 2011·6·20, 2011·12·26, 2012·3·30, 2012·12·17, 2013·60·19, 2014·12·29, 2016. 6. 7, 2016. 12. 19, 2018. 12. 17, 2019.12.23., 2020.12.21.>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4조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환경수도사업단 · 수 도 과 - 몽탄정수장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무안군 몽탄면 몽탄로 1149